

의안번호	2204049
의 퇴 인	송옥주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 계 번호	24D4049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안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억 4,300만원, 2030년 2억 5,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1억 8,000만원(연평균 4억 3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(안 제18조제1항제10호)	1,343	168	193	222	254	2,180	436

- 주: 1.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(안 제18조제1항)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2. 현행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리튬이온전지 공장에 소방설비등의 설치 지원으로 추가재정소요 예상
 3. 본 추계는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, 소방설비(리튬이온전지 화재 시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)를 공장 1개소 당 5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지원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제1항제10호(화재 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) 신설	시·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'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'을 추가하도록 규정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8조제1항제10호(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)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‘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’을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현행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
- 본 추계는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, 소방설비(리튬이온전지 화재 시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)를 공장 1개소 당 5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 -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‘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’(2024.9.9.)에 따르면, 리튬이온전지 화재 시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(재난안전제품 인증 완료)는 있으나 열폭주 차단 성능까지 검증된 소화약제·기기는 부재
 - 리튬이온전지 화재 시 완전한 진화는 어렵지만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의 사용으로 대피시간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에 리튬이온전지 화재 시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를 5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⁾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에서는 리튬이온전지 공장 1개소 당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를 5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수량을 산출하고 소화기 단가를 곱하여 산출
 - (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 수량) 2026년 2,605개, 2030년 455개로 추정
 - － 법 시행이 예상되는 2026년에 기 설치된 리튬이온전지 공장 전체가 대상이 되고 2027년 이후부터는 신규 설립되는 공장이 대상이 됨
 - － 소방청에 따르면, 2024년 10월 현재 리튬이온전지 관련 공장은 총 413개소이고 추계기간 동안 12.3%²⁾의 증가율 적용

[표 2]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 수량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개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리튬이온전지 관련 공장(누적)	521	585	657	738	829
신규 리튬이온전지 관련 공장	—	64	72	81	91
지원대상 공장 수(a)	521	64	72	81	91
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 수량(=a×5개)	2,605	320	360	405	45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5%	2.1%	2.0%	2.0%	2.0%

2) 통계청의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20년 483개, 2022년 609개로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12.3% 증가

- (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 단가) 2026년 515,503원, 2030년 557,997원으로 추정
 -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제품인증을 받은 리튬이온전지 화재 시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의 단가는 495,000원³⁾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에 따라 상승

[표 3]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 단가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	515,503	525,813	536,329	547,056	557,99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시·도지사가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3억 4,300만원, 2030년 2억 5,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1억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 수량(a, 개)	2,605	320	360	405	455	-
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 단가(b, 원)	515,503	525,813	536,329	547,056	557,997	-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1,343	168	193	222	254	2,1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2024년 11월 7일 웹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, 소방설비(리튬이온전지 화재 시 냉각효과가 있는 소화기)를 공장 1개소 당 5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지원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